

미 안전인증

Q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 ⑦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⑧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2. 수입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⑩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⑪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무엇인가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입니다.

| 대상품목 | 적용안전기준 |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 어린이 놀이기구 |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 어린이용 비비탄총 |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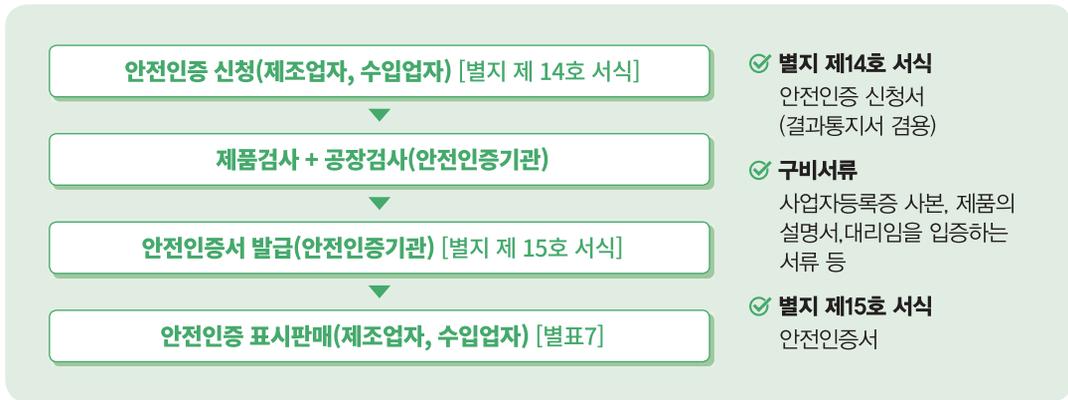
* 품목별 적용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 |
|--------------------|--|
| 관련 규정 |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

Q 안전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샘플 제품을 제조하고,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 어린이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나와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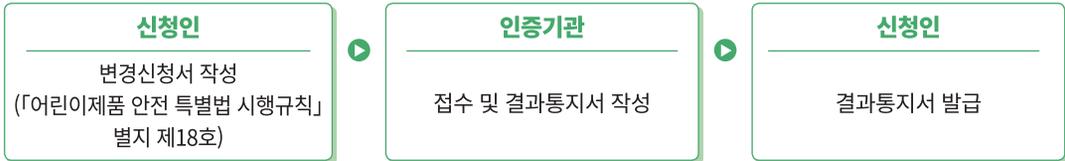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인증

- 제15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관한 모델의 구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 ④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 2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성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Q 안전인증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인증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제출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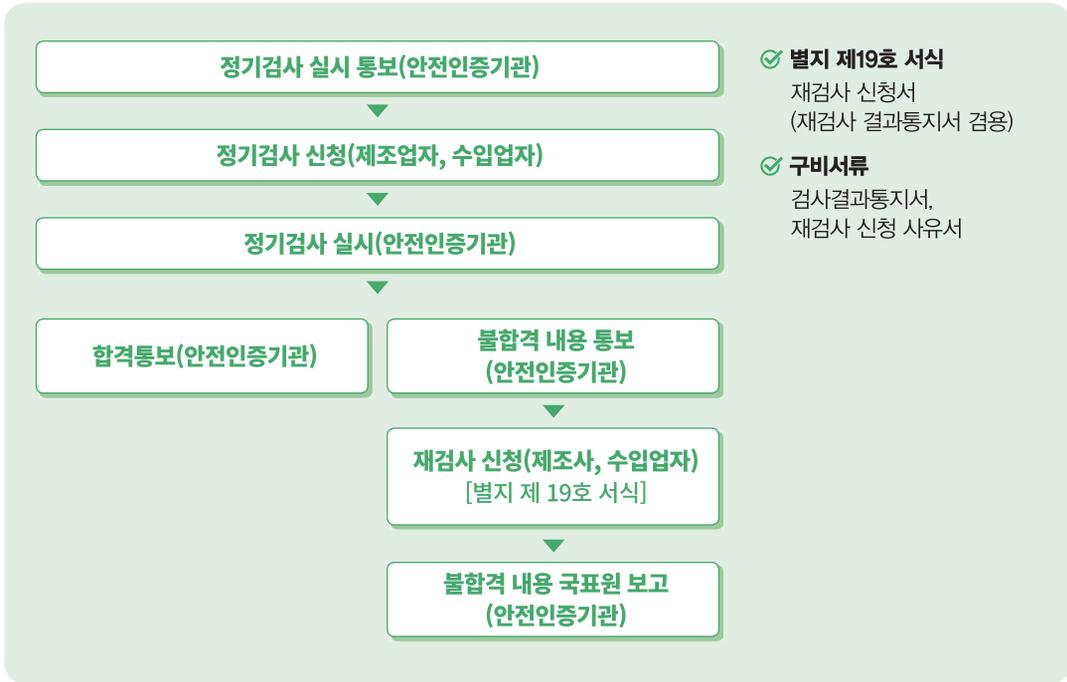
관련법령

- 제17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Q 정기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인증을 받은 후, 2년에 1회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장심사 시 검사설비·제조설비·보유 인력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6항

관련법령

제17조(안전인증 등)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Q 정기검사 면제도 가능한가요?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작성(제조업자, 수입업자)
[별지 제 20호 서식]

판정 및 통보(안전인증기관)

✓ **별지 제20호 서식**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 **구비서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7조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최근 2년간 실적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9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17조(안전인증 등)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Q 안전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전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

권리·의무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제8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7.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판매중지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등에 판매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관련규정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